

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. 2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1. 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1. 10.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2. 1. 2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
- 2) 민간위탁(재계약) 내용

○ 민간위탁기간 : 5년(2022. 7. 27. ~ 2027. 7.26.)

※ 최초 민간위탁일 : 1991년 7월 27일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○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
-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일체
-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일체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마포구 월드컵로 215 (성산동)
- 규모 : 2,210.66㎡ (성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시설 면적)
 - 건물자체 대지면적 1017.85㎡, 연면적 2,626.28㎡
 - 건물 내 관리사무소, 경로당 제외
- 층 별 현황
 - 본관 층별 현황

내용	면적(㎡)	실별구성	비고 (제외시설)
본관1층	622.88	다목적실, 성산누리어린이집, SH공사성산관리사무소, 로비, 화장실, 창고, 엘리베이터	관리사무소 209.54㎡
본관2층	486.66	방과후교실, 마포드림스타트센터, 백합경로당, 화장실, 로비	노인정 206.08㎡
본관3층	487.56	강당, 통합사무실, 행복한도서관, 경로식당, 엘리베이터, 화장실	
총면적	1,597.10㎡		

· 신관 층별 현황

구분	면적(㎡)	현황	비고
신관1층	350.07	통합사무실, 건강증진실, 프로그램실①, 로비, 화장실	
신관2층	329.04	프로그램실 ①②③, 전문상담센터, 창고, 화장실, 복도	
신관3층	350.07	프로그램실 ①②③④, 한부모가족센터, 중강당, 집단활동실, 화장실, 복도	
총면적	1,029.18㎡		

○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- 소요예산 : 1,156,400천원(시비 1,141,841천원, 구비 14,559천원)
- 산출근거

[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(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)]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1,156,400		
운영비	1,107,870	- 기본인건비 982,830천원 - 운영비 105,060천원 - 비정규직종사자처우개선비 1,080천원 - 종사자포인트 6,900천원 - 시설개방 12,000천원	시비 1,107,870천원 (100%)
기능보강 사업비	48,530	- 본관 출입구 개보수 공사 32,650천원 (시비 22,855천원, 구비 9,795천원) - 내부 도장 공사 15,880천원 (시비 11,116천원, 구비 4,764천원)	시비 33,971천원 (70%) 구비 14,559천원 (30%)

3) 세부추진일정

-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: 2022. 2월
-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: 2022. 3월 ~ 2022. 5월
- 협약체결: 2022. 6월
- 위탁운영: 2022. 7월 ~ 2027. 7월(5년)

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는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 및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,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근거하여 1991년 7월 27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
-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

한 조례』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,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(재 위탁)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- 따라서, 본 재계약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